

27. 주택공제조합 융자업무규정중 개정규정

자료제공 : 주택사업공제조합

개 정 이 유

최근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갱생을 위한 WORKOUT 프로그램이 활발히 진행중에 있어 우리 조합도 관련 조합원에 대한 WORKOUT 프로그램 협약시 조합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우리 조합의 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,

현행 규정에는 조합이 WORKOUT 조합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의 회수 유예 등 채권회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어 채권금융 기관과의 협의시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므로

WORKOUT 조합원에 대하여는 기업개선작업약정협의를 시 융자원리금의 상환유예 등과 관련한 우리 조합의 의견을 탄력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융자규정을 개정함.

주 요 골 자

조합원이 기업구조조정촉진을위한금융기관협약에 의한 기업개선작업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융자한도 및 이율(연체이율을 포함한다), 융자금의 상환기한 및 회수방법, 채무불이행시의 조치 등 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불구하고 당해 약정에서 정한 바를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(제21조의2).

용자업무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1조의2 WORKOUT 조합원에 대한 특례

조합원이 기업구조조정촉진을위한금융기관협약에 의한 기업개선작업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용자한도 및 이율(연체이율을 포함한다), 용자금의 상환기한 및 회수방법, 채무불이행시의 조치 등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불구하고 당해 약정에서 정한 바를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
(신 설)	<p><u>제21조의 WORKOUT 조합원에 대한 특례</u></p> <p><u>조합원이 기업구조조정촉진을 위한 금융기관협약에 의한 기업개선작업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용자한도 및 이율(연체이율을 포함한다), 용자금의 상환기한 및 회수방법, 채무불이행시의 조치 등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불구하고 당해 약정에서 정한 바를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다.</u></p>

주택회보